

이사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5월 25일(목) 12시

장 소 : 춘천시 신북읍 시골막국수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7. 05. 25(목) 12:00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시골막국수

● 재적이사 : 이사 7명

● 참석임원 : 5명. 대표이사(양성수), 이사(곽종옥, 김수길, 홍현국, 김철호)

● 주요안건

1. 제1호의안 : 법인 및 시설(계명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 제2호의안 :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
3. 제3호의안 : 법인임원 선임 승인
4. 기타사항 보고

● 성원보고

재적이사 7명 중, 이사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양성수의장이 보고하다.

● 개회선언

양성수의장이 2017년도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인사

바쁘신 가운데 법인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원로이신 곽종옥이사님께서 계시는 강원도 춘천에서 법인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회 주요안건으로는 법인 및 시설(계명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 법인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 마지막으로 기타사항 보고입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의견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차회의록 처리

양성수의장이 전차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여 조대현사무국장에게 낭독케 하고,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받기를 건의하여 회원 전원이 찬성하고 선포함.

● 안건심의

제 1 안 건

법인 및 시설(계명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양성수의장 : 제1호의안으로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설(계명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대현사무국장은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설(계명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현사무국장 : (별첨자료를 참고할 것을 요청하고) 먼저 법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인과 시설업무 담당자를 구분하고자, 법인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인건비를 인건비 지정후원금에서 집행하기 위해, 법인예산의 세입에 지정후원금 15,600,000원 증액하여 26,100,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인건비 항목을 15,600,000원 세목별로 계상하여, 2017년도 법인 본예산 116,000,000원에서 131,600,000원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법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다)

시설(계명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계명원 직원인건비 가족수당 인상지급이 4월에 확정되어 소급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항목으로 4,500,000원 증액하고, 공공요금·제세공과금·연료비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적정한 예산금액을 계상하고자 7,000,000원을 증액하여 시설(계명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 총금액 2,024,000,000원에서 11,500,000원 증가한 2,035,500,000원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명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다)

▶ 양성수의장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설(계명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국이사 : 그동안 시설직원이 법인업무를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양성수의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시설의 통합설치·운영등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설치·운영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에 표기되어 있는 규정의 해석은,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통합운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사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법인의 업무를 시설의 사무국장이 업무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타 시설의 사례가 있어, 본인이 법인에 인건비 지정후원을 해서 법인직원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법인운영과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법인예산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 박종옥이사 : 법인 직원 인건비를 이사장님 개인이 후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 및 시설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예산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 및 시설(계명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

▶ 김철호이사 : 박종옥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양성수의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 없습니다.

▶ 양성수의장 :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 “예”

▶ 양성수의장 : 이로써 법인 및 시설(계명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 하였습니다.

제 2 안 건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

▶ 양성수의장 : 제2안건은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입니다. 현재 수익사업이 없는 우리 법인의 예산 부족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법인기본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법인설립의 취지와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게 매각한 기본재산의 대금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8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1번지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재까지 법인 산하시설에서 약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재산피해와 침해를 막고자, 법인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가지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었으며, 법인기본재산 일부 매각과 법인 및 개인토지 교환에 대한 법인이사회 승인을 구하고 인천광역시 주무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 김철호이사 : 법인기본재산 매각과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양성수의장 : 기본재산 일부 매각의 가장 큰 목적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인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매각과 교환을 통해서 발생한 대금으로 법인에서 임대사업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계명원 건물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물신축 및 개보수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계명원 운영 및 퇴소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및 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명원에서 퇴소하여 대학교에 진학해 재학중인 아동이 19명이며, 최근 5년간 대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 아동들이 18명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 아동들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 하는 문제는 학자금 부족과 주거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사님들께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원해주시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기관 및 여러 단체의 지원을 연계하여, 장학금과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여 왔지만, 법인 차원에서 아동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별첨자료에서 보시

는 바와 같이, 인천시 동구 송림동 94-9. 94-44번지에 위치한 법인기본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인소유 토지와 개인소유 토지 교환 내용은, 약20년전 시설(계명원)을 강화도 양도면 조산리 현위치로 이전하면서, 양도면 조산리 21번지(임야)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그 당시 양도면 조산리 21번지(임야)의 토지 소유주는 전 등사 사찰의 소유로, 토지 매각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입을 못하고, 이듬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양도면 조산리 21번지(임야)의 토지 매각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어, 토지소유주인 전등사로부터 우리 법인에 조산리 21번지(임야) 토지 매입을 요청 받았으나, 법인예산 부족으로 매입을 못하고 법인토지 전체구조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득히 개인(조월현)이 조산리 21번지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법인예산이 가능한 시기에 법인에서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법인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었고, 개인 토지를 무상으로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지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토지 조산리 21번지(임야)와 법인토지 조산리5, 6, 7, 8번지(답)를 교환하여 법인기본재산 토지를 명확하게 재정립 하고자 합니다.

▶ 홍현국이사 : 자료를 살펴보면, 재산매각 및 교환에 대한 각 필지별 내역과 토지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정확한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법인기본재산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수의장 : 네! 법인기본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익감정평가법인의 토지감정을 실시하고, 재산감정평가 결과에 기준하여 법인기본재산 일부 매각과 교환에 대해 인천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기본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곽종옥이사 : 평생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부족한 예산으로 시설아동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어려운 사업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사장님, 계명원장님, 시설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법인기본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목적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설립자이신 “고양계석원장님의 뜻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법인소유토지와 개인소유의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개인(조월현)이 계명원에 소속되어 있고, 아동들을 위해 무상으로 시설에서 사용을 하게 하였으나, 인천시와 현명하게 협의하시어 앞으로 개인(조월현)에게 더 이상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안전에 동의합니다.

▶ 김수길이사 : 장기적으로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사료되며, 곽종옥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양성수의장 :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 안전에 곽종옥이사 동의와 김수길이사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 없습니다.

▶ 양성수의장 :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 일 동 : “예”

▶ 양성수의장 : 이로써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을 원안대로 처리 하였습니다.

제3안건

법인임원 선임 승인

▶ 양성수의장 : 제3안건으로 법인임원 선임에 관한 승인입니다. 법인임원(이사) 정수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증원된, 법인정관변경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되어, 신임이사 1명을 선임하고자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김수길이사과 김철호이사 두 분께서 법인이사에 추천해 주신 이운규선생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해주시면 법인과 시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운규선생 법인이사 선임에 대해 이사님들께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길이사 : 법인이사로 추천한 이운규선생은 오랜기간 정부중앙부처 공직 생활을 청렴하게 재직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 법인설립 배경과 취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15년간 가족들과 함께 계명원에 자원봉사활동과 후원을 해오신 분으로써, 법인임원으로써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분이라 생각하여, 법인임원 선임 승인에 적극 동의합니다.

▶ 김철호이사 : 법인임원으로 결격사항이 없고, 말씀처럼 법인 및 시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사료되어, 김수길이사 동의에 재청합니다.

▶ 양성수의장 : 법인임원 선임 승인에 대한 김철호이사 동의와 김수길이사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 없습니다.

▶ 양성수의장 :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 “예” (이운규선생 법인임원 선임이 승인됨)

● 기타사항 보고

● 폐회선언

양성수의장이 기타토의사항 여부를 묻고 없으면 폐회할 것을 요청하자, 김수길이사 동의하고 김철호이사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임원 전원이 찬동하고, 양성수의장이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니, 13시 10분이었다.

본 법인 임원께서는 이 회의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대서명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25일

대 표 이 사

양 성 수 (인)

이 사

곽 중 옥 (인)

이 사

김 수 길 (인)

이 사

홍 현 국 (인)

이 사

김 철 호 (인)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의결년월일	2017년도 임시이사회 2017.05.25	

법인 및 시설(제명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출자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대표이사 양 성 수
제출년월일	2017년 05월 25일

의안번호	제 2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2017년도 임시이사회 2017.05.25	

법인기본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

제출자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대표이사 양 성 수
제출년월일	2017년 05월 25일

의안번호	제 3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2017년도 임시이사회 2017.05.25	

법인임원 선임 승인

제출자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대표이사 양 성 수
제출년월일	2017년 05월 25일

의안번호	제 4 호	보고사항
의결년월일	2017년도 임시이사회 2017.05.25	

기타사항 보고

제출자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대표이사 양 성 수
제출년월일	2017년 05월 25일